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정당별 가나다순

구 분	남북교류협력지원	윤 리	장묘문화개 선	여 성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	지방자치발 진
위 원 수	12	12	12	12	12	12
새 천 년 민 주 당	구 철 회	김 평 성	김 노 진	김 명 수	김 성 태	고 명 곤
	김 관 수	김 홍 식	박 래 우	김 성 환	김 성 호	김 기 덕
	김 준 명	노 영 식	박 수 환	김 욱 원	김 주 철	김 농 욱
	김 태 운	정 규 진	오 세 근	나 중 문	박 겸 수	김 성 규
	김 판 길	조 양 호	임 원 빈	서 홍 선	윤 여 형	김 은 정
	송 미 화	최 명 욱	정 동 일	송 태 경	이 건 상	김 종 래
	신 경 식	함 태 호		유 진 영	임 동 순	이 재 진
	임 호 식	허 광 태		이 경 애	장 하 운	차 성 환
	정 현 군			이 영 순	주 세 만	최 영 수
	최 충 민					하 해 진
한 나라 당	강 영 원	조 성 대	명 영 호	이 해 식	백 의 종	이 종 필
	이 순 자	조 태 진	박 주 응	한 봉 수	이 정 은	차 원 갑
		황 을 수	안 병 소	한 춘 자	임 동 규	
			이 성 구			
			이 송 죽			
자 민 련			홍 순 철			
무 소 속		박 정 철				

서울특별시의회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19

2001년 3월 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3월 3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1년 3월 6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12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
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01년 3월 16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소방방재본부장 김광수)
- 가. 제안이유
 - 일부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현재 소방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여성의용 소방대”의 설치근거를 마련(안 제2조)
 - “부녀”를 “여성”으로 용어 정리(안 제3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태호)
 - 가. 의용소방대 설치근거
 - 소방법 제86조(의용소방대의 설치) 제1항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둔다”

제2항에서 “그 설치·명칭·조직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음.

- 위와 같은 설치근거에 의거 현재 21개 소방서에 4,278명(남자 2,454명, 여자 1,824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있으며,
- 주요활동업무는 소방활동보조, 주민자율소방의식 고취 등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음.

나. 의용소방대 수당 및 보상금

- 활동수당 및 치료, 장제, 유족, 장해시에 일정액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2001년도 의용소방대원의 피복비, 급량비, 회의비, 여비 등의 명목으로 6억 1천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다. 조례개정 내용은 “부녀소방대”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소방서별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되, “남성대원”과 “여성대원”으로 구분 설치토록 하고, 의용소방대장은 소방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임명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부녀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 이하 “의소대”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소대”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의소대는 소방서별로 설치하되, 남성대원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와 여성의용소방대를 별도로 설치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의소대의 명칭은 “○○소방서의용소방대” 또는 “○○소방서여성의용소방대”라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대장은 소방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서울특

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814
----------	-----

2001. 3
재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3월 3일, 서울특별시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1년 3월 5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12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2001년 3월 19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기획예산실장 김우석)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의 개정('99. 8. 31)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의 조문내용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가)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기한을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서 “80일” 이내로 개정하고(案 제24조),
- 나) 시장이 주민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 삭제(案 제31조).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10조(기금의 운영등)

- ③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99. 8. 31 개정)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비공개대상정보)

-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